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69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5월 3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설된 ‘자치경찰위원회’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‘자치경찰위원회’를 추가함(안 제33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
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2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더.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상임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 가.~너. (생략) 더. <u>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러. (생략)</p> <p>3.~10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가.~너. (현행과 같음)</p> <p>더. <u>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러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~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